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8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새싹따릉이 도입·운영 등으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연령 하한이 ‘13세 이상’으로 하향됨에 따라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대상인 청소년의 연령 하한을 ‘13세 이상’으로 하향하고,
- 나.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에 따른 인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을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대상 중 청소년의 연령 하한을 현행 ‘15세 이상’에서 ‘13세 이상’으로 하향함(안 제12조의3제2항제1호)
- 나.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실시를 위한 운영 근거를 신설함(안 제13조제6항).
- 다.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근거를 신설하고, 조례 개정 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부칙을 마련함(안 제12조의3제2항제6호 및 안 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2) 「청소년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2) 입법예고('21. 4. 1.~4. 21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”을 “「청소년 기본법」”으로, “15세”를 “13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제13조제6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

제13조제2항 중 “학생”을 “청소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3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의3(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</p> <p>1.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에 따른 청소년 중 <u>15세</u>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제13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 일체를 이수한 사람</u></p> <p>7.·8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3조(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, <u>학생</u>, 성인, 어르신,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12조의3(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청소년 기본법</u>」----- ---- <u>13세</u> ----- 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제13조제6항에 따른 자전거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</u>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 <u>청소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⑥ <u>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 용 추 계 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3(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)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을 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수입감소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전 제
 - '21년도 공공자전거 수입금을 15,458백만원으로 산정함
 - 따릉이 일일권 30%감면, 정기권 15% 감면 적용 ※ 감면율은 추후 결정
- 방 법
 - '21년 예상요금수입 중 정기권 결제액 55%, 일일권 결제액 45% 비율 적용
 - 1년간 인증제합격자 4,200명 추정, 인증제 합격자가 전체 따릉이 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0.15%(요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0.15% 적용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시행 요금 감면액 추계

(단위 : 천원)

감면 총액 추계(A)	감면액 추계		감면이전 징수 추계(B)	감면이후 징수 추계(B-A)
	정기권 감면액	일일권 감면액		
5,043	1,913	3,130	15,457,753	15,452,710

- ① 정기권 이용자 56% 사용 가정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감면이전 정기권 징수 추계(B) (55%)	정기권 감면액 추계(A)	감면이후 징수 추계(B-A)
15% 감면 시	8,501,764	1,913	8,499,851

- ② 일일권 이용자 44% 사용 가정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감면이전 일일권 징수 추계(B) (45%)	일일권 감면액 추계(A)	감면이후 징수 추계(B-A)
30% 감면 시	6,955,989	3,130	6,952,859

4. 작성자

-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한상미(02-2133-2757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세부추계내역

(단위 : 천원)

감면 총액 추계(A)	감면액 추계		감면이전 징수 추계(B)	감면이후 징수 추계(B-A)
	정기권 감면액	일일권 감면액		
5,043	1,913	3,130	15,457,753	15,452,710

① 정기권 이용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감면이전 정기권 징수 추계(B) (55%)	정기권 감면액 추계(A)	감면이후 징수 추계(B-A)
15% 감면 시	8,501,764	1,913	8,499,851

- 공공자전거 '21년 이용요금 예상 총수입액(15,457,753천원) × ①총수입 대비 정기권 수입 비율(55%) × ②인증제 합격자 따릉이 회원

추정비율(0.15%) × 이용요금 감면액(15%) = 1,913천원

⇒ ① '20년 총수입 대비 정기권 수입 비율 : 55%

⇒ ② 인증제 합격자 따릉이 회원 비율 : 0.15% = 4,200/2,785,579명

- 따릉이 인증제 합격자 추정 = 4,200명, '20년 말 따릉이 회원수 : 2,785,579명

② 일일권 이용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감면이전 일일권 징수 추계(B) (45%)	일일권 감면액 추계(A)	감면이후 징수 추계(B-A)
30% 감면 시	6,955,989	3,130	6,952,859

- 공공자전거 '21년 이용요금 예상 총수입액(15,457,753) × ①총수입 대비 일일권 수입 비율(45%) × ②인증제 합격자 따릉이 회원 추정비율(0.15%)

× 이용요금 감면액(30%) = 3,130천원

⇒ ① '20년 총수입 대비 일일권 수입 비율 : 45%

⇒ ② 인증제 합격자 따릉이 회원 비율 : 0.15% = 4,200/2,785,579명

- 따릉이 인증제 합격자 추정 = 4,200명, '20년 말 따릉이 회원수 : 2,785,579명